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위한 관련법령 공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규정

지난해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시행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9604호)되어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서 이 법령을 제정한 것은 항만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원을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지난 2005년 12월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정년 전에 희망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그 환수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이다.

이와함께 항운노동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취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공포된 지원특별법시행령의 주요골자를 보면,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영 제2조)로서 정부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고용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전에 적용되던 고용·정년·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보장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영 제4조 및 별표 1)을 정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조합을 탈퇴한 자로 한정하고, 지급기준은 정년 잔여기간별로 구분하여 항만별 월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생계안정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생계안정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영 제5조 및 별표 2)을 규정했다.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항운노동조합원에 재가입하거나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재가입하거나 재고용된 날까지의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환수하고,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각각 환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7조) 규정을 두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하는 자 각 4인 및 항만이용자대표와 항만공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